



IATF – 국제 자동차 산업 전담 팀

IATF 승인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규칙 5판 – **공인 해석**

IATF 16949를 위한 IATF 승인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규칙 5판은(“규칙 5판”) 2016년 11월에 출판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다음과 같은 공인 해석이 IATF에 의해 결정되고 승인되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인 해석은 출판 시 적용된다.

개정된 본문은 **청색**으로 보여진다.

공인 해석은 규칙 또는 요구사항의 해석을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부적합의 기준이 된다.

SI 1 2017년 6월 발행, 2017년 7월 1일 발효.

SI 2-5 2017년 10월 발행, 2017년 10월 1일 발효.

SI 6-7 2018년 11월 발행, 2018년 11월 12일 발효.

SI 8 2019년 10월 발행, 2019년 11월 1일 발효.

SI 1 2019년 10월 개정 및 재발행, 2020년 1월 발효.

SI 9-10 2020년 5월 발행, 2020년 6월 1일 발효.

| 번호 | 규칙 인용 | 공인 해석 |
|--|---|---|
| <p style="text-align: center;">1 개정됨</p> | <p style="text-align: center;">IATF 16949 심사원에 대한 신청 프로세스 및 기준 4.2</p> | <p>인증기관은 IATF 심사원 자격부여 프로세스 입문을 위해 신규 심사원 지원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후원 보증한 인증기관의 계약된 사무소는 각 지원자를 위해 완성된 신청서 양식과 IATF 심사원 자격 부여 프로세스에 대한 승인 및 접근을 위하여 관련 IATF 감독 사무소에 관련 지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심사원 지원자는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SO/IEC 17021 및 ISO 9001 심사를 수행하는 관련 인정기관 규칙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b) 제조 산업에서 심사 팀장으로 최소 3회와 더불어 ISO 9001 3자 심사를 최소 6회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자동차 부문 제조의 1자 또는 2자 시스템 심사 경력은 고려될 수 있다. c) 자동차 부문의 core tools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d) IATF 16949 적용성을 충족하는 조직에서 과거 10년 내에 15년 내에 자동차 산업 제조 조직에서 4년 상근의 적절한 실무 경력(품질보증 및/또는 품질경영 활동에 종사한 2년을 포함)을 가져야 한다 (4.0항 참조).¹ 비고: 화학, 전기, 금속 상품 분야(예, 항공우주, 전기통신, 철도(Rail), 산업용 오프로드 장비 등)에 있어 유사한 적용 범위를 가진 산업에서의 경력이 고려될 수 있다.¹ e) 신규 심사원 교육훈련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최소 2 일의 IATF 16949 3자 심사(특별 심사 제외)를 1 회 이상 관찰하여야 한다.²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¹IATF 16949:2016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동차산업 심사원 역량 허용. (2017년 6월 발행됨)</p> <p>²신규 심사원 교육훈련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IATF 제도에 대한 심사원의 지식 및 경험 향상시킴. (2019년 10월 수정됨)</p> |

| 번호 | 규칙 인용 | 공인 해석 |
|----|---|--|
| 2 |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심사 7.2</p> | <p>다음은 인증기관이 인증된 조직(client)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8.1 항 a) 및 8.1 항 b) 참조); - 조직(client)의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에 대응하여 (3.2 항 참조); - 조직(client)의 현장에서의 중대한 변경사항; - 인증서 정지의 결과로써 (8.3 항 참조); - 중 부적합에 대해 확인된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기 위해 (5.11.4 항 참조); - 미결상태이지만 100% 해결된 것으로 고려된 부적합에 대해 확인된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기 위해 (5.11.3 항 c 참조); - 실행된 시정 조치가 고객 성과 지표(들)의 달성에서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 인증서 철회(withdrawn)의 결과로써 (8.7항 참조).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ATF는 인증기관이 고객의 성과 지표 (예: 납기 및/또는 품질)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IATF OEM 특별 상태 조건으로 인해 고객에게 중 부적합사항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보아 왔다. 인증기관은 조직(client)의 IATF 16949 인증서를 일시 중지하고 현장의 특별심사를 수행한다. 현장의 특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관은 파악된 시정 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할 수는 있지만, 고객 성과 지표의 달성/개선으로 이어진 조치를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는 않았다. 이 새로운 요구사항은 고객 보고서/점수카드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특별심사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직(client)의 현장을 재방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인증기관에 부여한다.</p> |

| 번호 | 규칙 인용 | 공인 해석 |
|----|-----------------------------------|---|
| 3 | <p>최초 자격부여 프로세스 4.3.1</p> | <p>IATF 심사원 자격부여 프로세스로 접근이 승인되면, 신규 심사원 지원자는 IATF의 의무 공개교육(face-to-face)의 최초 자격부여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하여 기술적 적격성을 실증하여야 한다. 최초 자격부여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심사원에게 IATF 인증기관 심사원 신분증(ID카드)이 발급되며 후원 보증하는 인증기관에게는 심사원이 후원 보증한 인증기관을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인증서가 발행될 것이다.</p> <p>인증기관은 해당 심사원이 최초 자격부여의 60일 이내에 온라인 IATF 심사원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심사원 인증서 발급은 심사원 카드와 중복되는 자격인정을 입증한다. 심사원 후보자는 이제 최초 자격부여 후 60일 내에 들어오는 것 대신에 최초 공개교육 자격부여 전에 IATF ADP를 입력해야 한다.</p> |
| 4 | <p>재 자격부여 프로세스 4.3.2</p> | <p>인증기관은 해당 심사원이 최초 자격부여의 2년 이내에 온라인 IATF 심사원 개발 프로세스에서 그들의 최초 지식 및 적용 평가를 완료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재 자격부여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완료 후, 심사원은 신규 IATF 인증기관 심사원 신분증(ID카드)을 발급받고, 후원 보증하는 인증기관에게는 심사원이 인증기관을 위한 심사 수행을 지속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인증서가 발행될 것이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심사원 인증서 발급은 심사원 카드와 중복되는 자격 인정을 입증한다.</p> |

| 번호 | 규칙 인용 | 공인 해석 |
|----|------------------|---|
| 5 | 지원 활동 5.5 | <p>인증기관은 제조 현장의 심사 아래에 있는 코멘트 필드에 각 심사 지원 기능 (즉, 심사된 장소 이름, 심사 일자, 심사원 성명 및 각 심사원의 심사일 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원격 지원 기능이 둘 이상의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단일 제조 현장 아래에 심사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정보는 지정된 형식, 영어이어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인증기관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관찰된 현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격 지원 장소의 심사를 IATF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기 위해</p> |
| 6 | 심사원 인증 유지 4.5 | <p>각 인증기관은 후원 보증 받는 각각의 심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 및 거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프로세스는 다음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a) 평가 결과 및 개발 진행상황을 포함하는 IATF 심사원 개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관리;</p> <p>b) 다음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의 측정과 지속적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심사 보고서 제출의 시의적절성 (5.10항 참조); - 조직(client) 부적합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최종 심사 보고서 제출의 시의적절성 (5.11.3항 참조); - 인증 결정의 결과 (5.12항 참조); - IATF 입회 심사의 결과; - 개별 부적합 분석; |

| 번호 | 규칙 인용 | 공인 해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관 내부 입회 심사의 결과, - 심사 후 설문조사의 결과, - 조직 및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 <p>c) 최소 심사횟수 및 최소 심사일수 요구사항에 대한 완료 (4.5.1항 참조);</p> <p>d) 최소 CPD(지속적인 인원 개발) 시간의 완료 및 승인 (4.5.2항 참조);</p> <p>e) 모든 후원 보증 받는 심사원들에 대한 (상기 a) – d)) 기록들은 계약된 사무소에서 유지되어야 한다.</p> <p>수용가능한 수준의 성과가 달성되거나 유지되지 않으면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해야 하는지를 정의해야 한다.</p> <p>인증기관은 스폰서 받은 심사원과 관련하여 부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감독 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p> <p>IATF는 성과 때문에 IATF 16949 심사원의 자격부여를 경고하거나, 정지하거나, 영구히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IATF 16949 심사원의 활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정지 중에 IATF 16949 심사원은 IATF 16949 심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IATF 16949 심사원의 자격부여가 철회되면 관련 감독 사무소와 인증 기관 모두가 해당 심사원을 비활성화 하여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기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증 기관은 그들의 심사원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IATF 16949 심사원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정의하도록 프로세스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IATF가 모든 IATF 16949자격 인정된 심사원에 대해 해당심사원의 성과에 근간하여 또는 부정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p> |

| 번호 | 규칙 인용 | 공인 해석 |
|----|---------------------|--|
| 7 | IATF 16949 인증자격 1.0 | <p>“고객-지정 생산 부품” 은 차량의 필수적인 부분인 부품들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포함되는 고객-지정 부품들은 다음 부품들 만이다: 소화기, 카잭(car jack), 및 바닥 매트(floor mats), 사용자 매뉴얼(owner’s manual), 및 경고용 삼각 표지판(warning triangles) 및 반사 조끼(안전 조끼).</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경고용 삼각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 규정/표준에는 차량에 반사 조끼(안전 조끼)를 요구한다.</p> |
| 8 | 심사팀 구성 5.6 | <p>인증기관은 3년 심사주기의 각각의 사후관리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2 단계 심사 팀에서 적어도 한 명의 심사원을 지명하여야 한다.</p> <p>비고: 만약 다른 심사 팀원이 사후관리 심사에 배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심사원 순환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관련 감독사무소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사직, 또는 인증기관 후원의 상실; - ADP 및 IATF 데이터베이스에서 심사원의 불활성화; - 조직(client)과의 이해관계 상충; - 개인 문제 (의료적 상황, 죽음 등과 같은); - 불가항력.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인증기관 심사원과 조직(client)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심사원 교체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사무소는 면제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통지받기를 원한다.</p>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9</p> | <p style="text-align: center;">서문</p> | <p>이 문서는 국제 자동차 산업 전담팀(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IATF))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기존 멤버는 8개의 OEM: BMW 그룹, FCA US LLC, 다임러AG, FCA Italy Spa, 포드 모터사(Ford Motor Company), 지엠모터사(General Motors), PSA 그룹, 르노 그룹 및 폭스바겐(Volkswagen AG), 그리고 5개국 협회: ANFIA, AIAG, FIEV, SMMT와 VDA로 구성되어 있다.</p> <p>2019년 10월 IATF는 재규어랜드로버(JLR) 유한회사를 IATF의 새로운 OEM 멤버로 맞이했다.</p> <p>서문의 모든 단락은 이 SI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IATF OEM 회사 이름을 최신 이름으로 조정하였고, JLR 을 새 멤버로 추가하였으며, IATF 웹 사이트 멤버 목록에 따라 FCA 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였다.</i></p> |
| <p style="text-align: center;">10</p> | <p style="text-align: center;">현장심사 활동 수행 5.8</p> | <p>각각의 현장심사 (2단계, 사후관리, 갱신 및 전환 심사)는 최소한 다음에 관한 심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p> <p>a)...j)</p> <p>k) 심사되는 고객 지정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고객 지정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와 증거. 고객 지정 요구사항은 3년 심사주기에 걸쳐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샘플이 취해져야 하고 심사되는 요구사항의 구체적 기록은 보유되어야 한다. IATF OEM 멤버(BMW 그룹, FCA US LLC, 다임러 AG, FCA Italy Spa, 포드모터사, GM, 재규어 랜드로버(JLR) 유한회사, PSA 그룹, 르노 그룹, 및 폭스바겐 AG)에 의해 발행된 고객지정 요구사항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비고: 이러한 IATF OEM 고객지정사항은 IATF OEM 지정사항, 계약용어, 서비스 수준 합의사항, SQA 절차서 등으로 발행될 수 있다</p> <p>l)...r)</p> <p>섹션 5.8의 다른 모든 단락은 이 SI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p> |

| | | |
|--|--|---|
| | |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ATF OEM 회사 이름을 최신 이름으로 조정하였다. 이 규칙 요구 사항에 JLR 을 포함하였다.</p> |
|--|--|---|